

의안번호	2201592
의 퇴 인	김현 의원
회 답 일	2024. 8. 20.
추 계 번호	24B185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5조의3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신설	• 체신관서는 제45조의2제1항 ¹⁾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 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제3항)	의무규정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위탁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제5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5조의3 신설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 안 제45조의2(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체신관서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상세 사유

- 실손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시스템 구축·운영 등(안 제45조의3 신설)
 -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전산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부여한 「보험업법」(법률 제19780호, 2024.10.25. 시행 예정)의 개정에 맞추어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체신관서가 보험금 청구 서류 전송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실손보험계약 보험금청구 전산화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 ‘실손보험 전산화 TF’에 우정사업본부도 참여하고 있고, 향후 우체국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도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예정으로, 현재는 시스템 개발 이후 테스트 단계에 있음
 -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어 향후 우정사업본부도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경우 시스템 개발 비용과 시스템 사용 비용을 시스템 사용 주체 사이에 분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는 시스템 개발 및 사용 비용에 관한 분담 계획이 정해지지 않아 우정사업본부의 비용 부담분을 알 수 없어,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실손보험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진행 경과²⁾

가. 실손청구 전산화 구축개요

□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되었으며, '23년말 기준 약 4천만명이 가입한 필수적인 보험상품

- 연간 약 1억건을 초과하는 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복잡한 절차*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지속

* ①보험금 청구서류 확인 → ②의료기관에 서류발급 신청 → ③서류수령 → ④보험금 청구서 작성 → ⑤서류제출 → ⑥보험금 지급 심사 → ⑦보험금 수령

- 또한, 진료비 영수증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수억장의 종이서류를 발급하고 처리하는데 사회적 비용낭비가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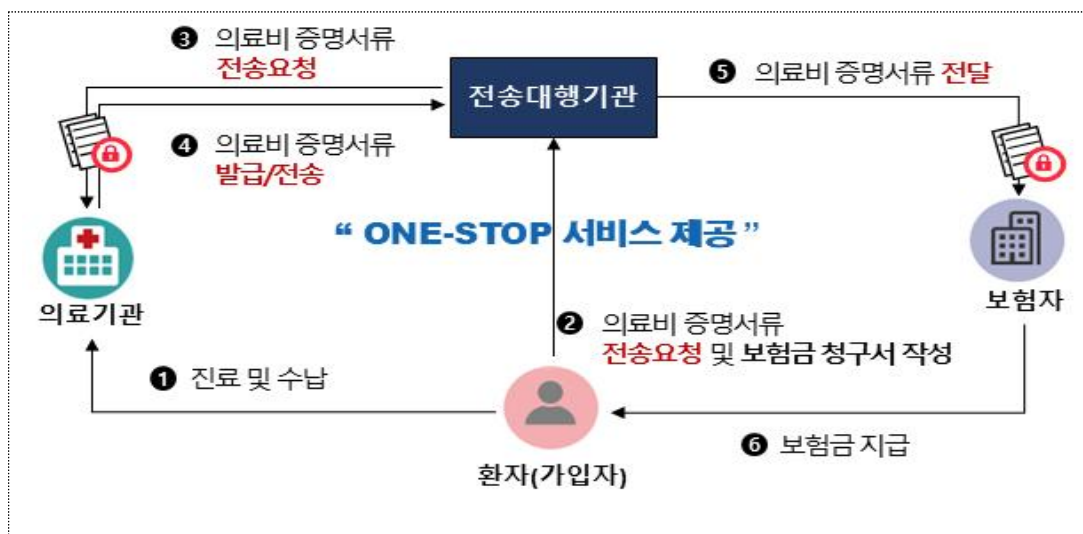
□ 이에 정부는 소비자가 전송대행기관*을 통해 One-Stop으로 실손보험금 전산청구(이하 ‘청구 전산화’)가 가능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

*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23.10.24 공포 ㉸ '24.10.25 병원급 시행(1단계) ㉸ '25.10.25 의원급 시행(2단계)

실손청구 간소화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며, '22.4월, 「디지털플랫폼정부 TF(인수위)」 설문조사에서도 '실손 청구전산화'가 우선순위 1위 과제로 선정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전산화 개요



2) 보험개발원 제출자료

나. 실손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진행경과

1. 시스템 구축 현황

□ (시스템 구축) 전송대행기관 시스템 구축은 일정대로 추진 중이며 8월부터 통합 테스트* 진행중

* 개발·단위테스트 : ~7/31, 통합테스트 : 8/5~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일정

구 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설계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							
개발	업무시스템 개발	—	—	—					
테스트	단위테스트		—	—					
	통합테스트				—	—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			
오픈	시범오픈*						10/4		
	서비스 운영						10/25	—	—

* 일부 요양기관 선정 및 이용자 동의구득 등을 통해 실제 운영환경에서 자료교환 및 베타 테스트 수행(법률검토 진행 중)

- (중계시스템) 외부기관 시스템 연계 및 자료 송수신 · 중계
 - 본인인증 및 회원관리, 보험금 청구, 요양기관 · 보험사 연계 및 자료 송수신 · 중계 기능 구현
- (대국민 포털) 웹 및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
 - 보험계약 및 요양기관 진료목록 조회 · 선택, 보험금 청구(자녀 · 대리 · 추가 청구 포함) 기능 개발
- (기관 포털) 요양기관 · 보험사 · 운영자(우리원) 시스템 관리
 - 기관 인증서 및 담당자 등록 · 관리, 자료 송수신 내역 조회, 요양기관 계약관리, 개발 가이드, FAQ 등
- (콜센터) 대국민 상담 · 응대 및 처리 현황 관리
 - 보이는 ARS, 상담 화면, 챗봇, 상담사 관리, 통합운영 관리 대시보드 화면 등 기능 구현

□ 정보보안

- IT인프라 및 어플리케이션(웹 및 앱)을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 개선 조치 수행
 - (자체 점검) 정보보호전문서비스 업체인 (주)사이버원(과기정통부 지정)과 함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개선조치 수행(7/8~8/3)
 - (금융보안원 점검)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점검(8/19~8/30), 금결원 계좌실명 조회업무 이용 관련 보안점검*(8/12~9/30)
- *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약관(금결원과 이용기관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한 약관)에 따른 절차

□ IT인프라 구축

- (전산센터) IDC 전원·케이블 공사 완료(7/5), 전산장비 및 S/W 설치, 네트워크 환경 구성 등(~7/31)

< 전산센터 전산기기 설치 현황 >

구 분		서버	네트워크	보안	기타*	합계	비고
주센터	계획	18	47	39	30	134	~7/31 완료
	실적	18	47	39	21	125	
재해복구센터	계획	13	25	19	16	73	~8/31 완료
	실적	13	25	19	9	66	

* DBMS 및 백업장비, 서버랙 등

- (네트워크 회선망) 대국민 서비스(웹 및 앱), 요양기관 등 연계 구축을 위한 인터넷 회선, 우리원 전산센터 및 신정원 연결 등을 위한 전용회선 설치(주회선 SKB ~7/31, 부회선 LGU+ ~8/30)

2. 대외 시스템 현황

□ (한국신용정보원) 실손보험 계약정보 실시간 조회

- 업무협약 체결(6/27), 이용기관 등록(7/5), 기능 개발(7/1~8/31), 연계 테스트(9/2~9/30)

□ (금융결제원) 지급계좌번호 및 실명 유효성 실시간 확인

- 이용 신청(4/15) 및 적합성 심사(5/22), 개발 및 테스트(7/1~7/26), 기능 및 보안점검(7/29~9/30), 이용계약 체결(9/9~9/30)

□ (행정안전부)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 확인

- 이용기관 자격 신청(6/14), 수요조사 참여(7/15), 심층조사 참여(8월), 개발 및 테스트(8~9월), 서비스 오픈(10/25)
 - * 행정안전부와 잠정 협의된 일정으로 추후 변동 가능

3. 선도, 확산사업 현황현황

□ (사업목적) 요양기관과 보험사간 서류 전송대행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 편의성·건강 증진 도모 및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일괄 오픈 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함

□ 참여대상

- (선도사업) 자체 EMR 시스템 보유 요양기관 또는 상용 EMR 솔루션 제공사
- (확산사업) 요양기관(병원 이상) 및 상용 EMR 솔루션 제공사
 - 단, '상용 EMR 솔루션'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해당 솔루션 제공사'와 공동 참여하여야 함

□ 진행경과

- (선도사업) 116개 요양기관과 계약체결 완료
 - * 상급종합 13개, 종합병원 52개, 병원 26개, 상용EMR사 7개
 - (서버설치) 113개 기관 설치 완료
 - (API개발) 시스템 연계, 개발 관련 지원 및 문의 응대
- (1차/2차 확산사업) 참여신청 접수 및 확산사업 대상 선정
 - (선정현황) 총 88개* 선정(1차 52개, 2차 36개)

- * 상급종합(16), 종합병원(45), 병원(12), 요양(4), 치과(4), 한방(7)
- (계약체결) 요양기관 포털을 이용한 전자계약체결

4. 시스템 오픈 및 운영 계획

□ 시범 오픈(10/4~), 서비스 운영(10/25~)

- 시범 오픈 기간에 실제 운영환경에서 최종 테스트 수행
- 종합상황실 운영(시스템·보안 관제)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다. 실손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예산(안)

- (구축예산) '25년까지 실손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됨
 - 병원 연계, 홍보관련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세부 예산(안)을 논의중
- (확산예산) 1차 시스템 오픈('24.10.25) 요양기관(EMR업체 포함)과의 연계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요양기관 지원정책 등의 변경에 따라 향후 추가비용 발생 가능
 - 2차 시스템 오픈('25.10.25) 대상인 의원·약국에 대한 예산(안)은 향후 논의할 예정
- (운영예산) 콜센터와 통합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편성됨
 - 대외연계(예:신정원(계약정보조회), SCI(본인인증) 등), 네트워크 및 전산시스템, 인건비 및 사업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예정이며 추후 세부 예산(안) 논의 예정

연도별 구축/확산 예산 내용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합계
		2분기	3분기	4분기		
구축예산		16,259,420	3,863,153	13,535,667	35,351,760	69,010,000
확산예산 (선도사업 포함)		—	10,507,125	—	—	10,507,125
합계		16,259,420	14,370,278	13,535,667	35,351,760	79,517,125
운영 예산	콜센터	—	—	740,000	2,960,000	3,700,000
	통합유지보수	—	—	4,548,369	3,369,026	7,917,395
합계		—	—	5,288,369	6,329,026	11,617,395